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6. 9. 16.

발 의 자 : 조승환 · 안철수 · 김승수
김은혜 · 서천호 · 이성권
곽규택 · 김성원 · 김태호
이상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21. 6. 14., 2017헌바479)을 하고 2023. 6. 30.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해당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정하고, 변동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여 규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保安觀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保安觀察法”을 “보안관찰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지는 기간(이하 “변동신고의무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조제3호의 보안관찰해당범죄로서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30년
2.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보안관찰해당범죄로서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25년
3. 제1호 외의 제2조제3호의 보안관찰해당범죄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20년

4. 제2호 외의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보안관찰해당범죄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15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보안관찰해당범죄: 10년

③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하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의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2.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

④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의 청구와 결정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안관찰처분청구”는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의 청구”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그 청구서”로,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는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을 청구받은 자”로,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는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을 필요로 하는 자료”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및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안관찰처분 및 변동신고의무기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4.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기간의 계산)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첫날은 산입한다.

②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④ 변동신고의무기간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첫날은 산입한다.

제27조제2항 중 “第6條第1項・第2項 및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신고를 할 때에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9조제2항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되어 이 법 시행 당시 면제결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에 대한 특례) ① 제6조

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일은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로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동신고의무기간이 지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2.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동신고의무기간이 만료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②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진행된다. 이 경우 첫날은 산입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保安觀察法</u> 第6條(保安觀察處分對象者の 申告) ① (생략) ②保安觀察處分對象者は 矯正所등에서 出所한 후 第1項의 申告事項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變動이 있는 날부터 7日이내에 그 變動된 사항을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은 者が 住居地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管轄警察署長에게 第18條第4項 但書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u><신 설></u>	<u>보안관찰법</u> 第6條(保安觀察處分對象者の 申告)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u>제6조의2(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u> ① <u>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u>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지는 기간(이하 “변동신고의무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조제3호의 보안관찰해당범죄로서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30년

2.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보안관찰해당범죄로서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25년

3. 제1호 외의 제2조제3호의 보안관찰해당범죄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20년

4. 제2호 외의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보안관찰해당범죄로
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15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보안관찰해당범죄: 10년

③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보안관
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을 연장하
는 결정(이하 “변동신고의무기
간 연장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의 기간
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2.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

④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
의 청구와 결정에 관하여는 제
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
다. 이 경우 “보안관찰처분청

	<u>구”는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의 청구”로,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그 청구서”로,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는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을 청구받은 자”로,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는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을 필요로 하는 자료”로 본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및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第12條(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 <u>①保安觀察處분에 관한 事案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法務部에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u> <u>② ~ ⑧ (생략)</u> <u>⑨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案을 審議・議決한다.</u> <u>1. 保安觀察處分 또는 그 棄却의 決定</u>	第12條(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u>① 보안관찰처분 및 변동신고의무기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 ⑧ (현행과 같음)</u> <u>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u> <u>1.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u>

2. 免除 또는 그 取消決定

3. 保安觀察處分の 取消 또는 期間의 更新決定

⑩・⑪ (생략)

第25條(期間의 計算) ①保安觀察處分の 期間은 保安觀察處分 결정을 執行하는 날부터 計算한다. 이 경우 初日은 算入한다.

②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期間은 保安觀察處分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第27條(罰則) ① (생략)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4.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

⑩・⑪ (현행과 같음)

제25조(기간의 계산)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첫날은 산입한다.

②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④ 변동신고의무기간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첫날은 산입한다.

第27條(罰則) ① (현행과 같음)

②정당한 이유없이 <u>第6條第1項 · 第2項 및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그 申告를 함에 있어서 居住豫定地나 住居地를 명시하지 아니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③정당한 이유없이 <u>第19條第2項의 措置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④<u>第20條第4項에 위반한 者는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⑤ ~ ⑦ (생략)	② -----<u>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u> ----- ----- ----- -----<u>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u>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신고를 할 때에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람</u> 2. <u>정당한 이유 없이 제19조제2항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u> ④ ----- <u>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u> ⑤ ~ ⑦ (현행과 같음)
---	---